

누드 사진 소동과 저작권 침해



1988년 6월이었다. 국내 유명 월간지 두 곳에 실린 누드 사진들이 뜨거운 화젯거리가 되었다. 비교적 격조 높은 잡지로 알려진 월간〈직장인〉 6월호에 제목부터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기사가 실렸다. ‘한국 여대생, 연예인 누드 사진이 포르노로 둔갑’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바로 그것이었다.

월간〈뷰티 라이프〉 역시 같은 소재를 다루면서 ‘사진 예술 작품들 일본으로 건너가 포르노성 기획으로 전락’이란 제목을 다는 바람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게재된 사진은 대부분 전라 또는 반라의 젊은 한국여인들이었고, 일부 사진은 선정적인 포즈로 눈길을 끌었다.

이 누드 사진이 초여름을 더 끄겁게 달군 이유는 누가 뭐래도 문제의 모델들이 한국여성이고, 이 한국여대생과 연예인들의 누드가 일본 대중 잡지에 먼저 실렸다는 데 있다.

국내 두 잡지는 비판적인 관점에서 이 사진과 기사를 게재했다고 내세

웠지만 감상용 화보 형식을 취함으로써 상업주의와 선정적 측면도 놓치지 않았다. 특히 외국 잡지의 사진 해설을 그대로 번역했다는 점에서 비평 기사가 아니라 고보는 시각도 있었다.

또 두 잡지는 예술성이 전혀 없는 일본〈팬트하우스〉지에 수록된 알몸 사진을 함께 소개했다. 한국여대생이라며 소개된 젊은 여성들의 누드 사진은 팬티만 입고 포즈를 취한 것으로 일본〈플래쉬 FLASH〉에 게재된 사진과는 성격적으로 달랐다. 특히 국내 잡지〈뷰티 라이프〉는 붉은 활자를 써서 밀봉 페이지라고 선전함으로써 독자들의 흥미를 돋우려고 애썼다.

화제 대상이 된 누드 사진의 작가는 한국인 이재길 씨였다. 그 당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던 상업 사진 작가 이재길 씨는 일본의 시사주간지〈플래쉬〉의 청탁을 받고 작품 11점을 게재했다. 이재길 씨는 자신의 창작물에 자부심도 있었고 일본 잡지에 게재된 자신의 사진들이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재길 씨는 수차례 개인전도 열었고 당시 전매청 등에도 작품을 고가로 판매하는 등 국내외 상업 사진계에서 명성을 날리던 작가였다.

무엇보다도 이재길 씨는 국내 잡지에서 자신의 사진 저작물을 무단 게재하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에 분노했다. 음란성을 앞세우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려는 의도에서 대부분의 사진을 화보로 제작한 사실에 주목했다.

사진 작가 이재길 씨는 두 잡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결심했고, 저작권 침해와 명예 훼손 등을 이유로 손해 배상 등을 청구했다. 비록 그 사진은 일본에서 출판되었더라도 복제, 배포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저작권 침해로 봐야 마땅하다는 것이었다.

두 잡지사의 반박도 만만치 않았다. 시사 보도를 위한 비평과 논평이

목적이었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누드 사진이 게재된〈플래쉬〉 잡지는 일본에서 비교적 질이 낮은 시사주간지다. 젊은 한국 여성들의 누드 사진이 그런 잡지에 게재된 것은 한국 젊은 여성들에 대한 일본인들의 호기심만 충족시킬 뿐이며, 그들에게 한국 젊은 여성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심어 줄 가능성이 있다. 우리 민족감정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었으므로 이를 보도, 비평하기 위해 사진을 인용했을 뿐이다”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오랜 법정 공방에서 이재길 씨가 승소했다. 대법원의 판결 요지를 살펴보면 ‘문제의 누드 사진은 음란물로 볼 수 없다.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학술·예술의 범위에 속하면 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않는다. 원고의 저작권은 인정된다. 피고가 게재한 사진의 질·크기·배치 등을 살펴볼 때 보도의 목적보다는 감상용으로 인용되었다고 보아 저작권법 제24조의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국 두 잡지사측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이재길 씨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했다.